「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이 정 화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노인 복지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의2)

・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
나. 용어 및 인용사항 등 정비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의2,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※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(2026. 4. 20.)

※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(2026. 4. 27.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.

- 다만, 최근 집행 실적과 기금 운용성과를 토대로 일반회계와의 역할을 구분하고, 미등록경로당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- 또한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, 미등록경로당은 시설별 미등록 사유와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,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요건 보완과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정식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